##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39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류호정・유정주・양정숙

장혜영 · 최혜영 · 심상정

배진교 · 최승재 · 용혜인

이은주 · 이상헌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

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

법률 제 호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7	내 정	안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u>&lt;</u> 삭 제>	> -		
<u>예방</u>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	<u>&lt;</u> 삭 제>	<u>&gt;</u>		
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				
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				
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				
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				
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				
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 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 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 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결제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

   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 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 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 6. ~ 9. (생략)

제59조(벌칙)
<u>.</u>
1. ~ 4.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6. ~ 9. (현행과 같음)